

# 인천영종 A-10BL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 청약센터(<https://www.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 당첨자서류 제출 기간에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하며, 당첨자서류 미제출시 계약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일정 및 당첨자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 제출일자를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기간연장 없음)
- 금번 안내문 외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게시되는 분양공고문과 사이버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공고일 이후 접속 가능하며, 인터넷 주소는 공고문에 기재 예정)

## 1. 공급대상 및 일정

- 공급대상 : 인천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10BL 공공분양주택(총 600세대)

블록	주택형	전용면적(예정)	공급면적(예정)	건설호수	입주
A-10	84A	84.83m <sup>2</sup>	107.4267m <sup>2</sup>	414	'24.03월 (예정)
	84B	84.79m <sup>2</sup>	107.5893m <sup>2</sup>	186	
소 계				600	

## ■ 공급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1. 10. 22. (예정)	LH 청약센터( <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현장접수 불가)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1. 11. 01.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후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된 일자 및 접수장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위 접수일자에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 분양조건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21.10월 중 공고 예정) 참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물 견본주택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추후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1.10월 예정)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 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주택 및 분양권 등]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제외)

##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주택의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 됩니다. (미계약, 미신청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함)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됩니다.  
(특별공급에 신청 미달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대상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 3. 유의사항

- 해당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21.10월 공고예정)상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 게시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21.10월 공고예정)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공고일 이후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신청형별 세부사항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팸플릿 및 사이버견본주택 주소는 공고일 LH청약센터에 게재 예정)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수도권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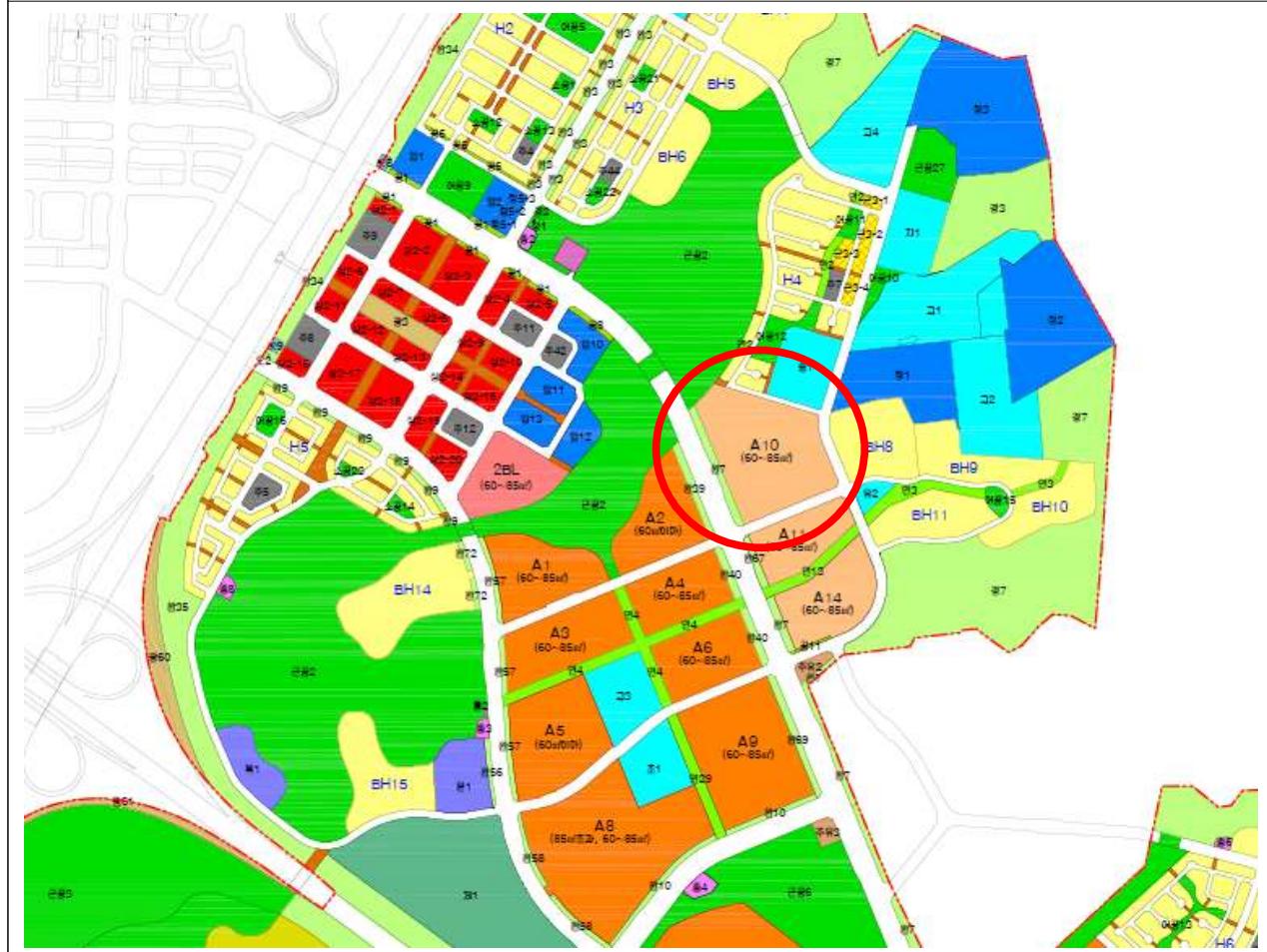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중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인 중복청약이나 세대원 중복청약으로 1세대 내 2건 이상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단, 예비대상자는 일반공급만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단지배치도 등 단지관련 정보

※ 해당내용은 신청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팸플릿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도]



## [단지배치도]



## [조감도]



## 5. 단위세대 평면도

※ 평면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팸플릿을 통해 확정된 평면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4A형 ]



[ 84B형 ]

